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이호진 의원 발의

나. 의안번호: 제3675호

다. 제출일자: 2026. 5. 26.

라. 회부일자: 2026. 5. 27.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법제과 의뢰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 받았으나, 기획경제
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는 게 적절
하다는 의견 받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신부를 명시하여 임신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¹⁾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등 전 생애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 2024년 5월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³⁾한 바 있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 제작('24년 8월)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신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해 온 것으로 파악됨.

<임산부 자격확인서비스(서울시 여성가족실)>

자격정보	보유기관	입력정보	출력정보
임산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신부여부, 다태아여부, 분만예정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5.20.], [2024.5.20., 제정]

- 안 제14조제2항의제19호는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신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관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기조에 부합하며,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임신부에 대한 실질적 배려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미 성립된 예산을 전제로 세입이 편성된 상황에서 감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전망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 세출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산 원칙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 자원 보전 방안 마련 및 시행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